

함양군-함양군의회-함양교육지원청-함양군 청렴기획단

## 업 무 협 약 서

함양군과 함양군의회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과 함양군 청렴기획단은 군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함양군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목적】 본 협약은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과 함양군 청렴기획단 간 청렴문화 조성 및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 및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협약사항】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.

1. 기관 간 공동정책 수립 및 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
2. 청렴시책 및 행사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
3.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행정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
4. 기타 청렴한 함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3조 【협약이행】 제2조에서 정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, 세부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.

제4조 【협약기간】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, 해지하거나 재협약을 하지 않을 시 다음 연도 까지 유효하며, 1년씩 자동 연장한다.

제5조 【협의조정】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6조 【협약해지】 기관 간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에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해지 전 30일 전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 【효력】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본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6월 29일



함양군  
군수



함양군의회  
의장



함양교육지원청  
교육장



함양군 청렴기획단  
단장

부호국

황태진

이종훈

이백열